

대통령령 제 호

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5조 중 “합격자 명단을”을 “합격자를”로 한다.

제12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제출”을 “제출(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)”로 한다.

제149조제5항 중 “면허수첩”을 “면허증”으로 한다.

별표7 제8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가. 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면허증 신청의 접수·심사 및 면허증 교부(재교부 포함)

부 칙

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25조(합격 통지 등) 위원회는 법 제87조제4항에 따라 면허시험의 합격자 명단을 시험실시기관의 게시판에 공고하고 합격자에게는 개별 통지한다.	제125조(합격 통지 등) ----- ----- <u>합격자를</u> ----- ----- -----.
제126조(면허증의 재교부) 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면허증을 교부받은 사람 중 그 면허증을 훼손 또는 분실하였거나 기재사항이 변경되어 면허증의 재교부를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재교부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	제126조(면허증의 재교부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제출(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)</u> -----.
1. ~ 3. (생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제149조(보수교육) ① ~ ④ (생략) ⑤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과정수료자에 대하여 그 <u>면허수첩</u> 에 교육이수 사실을 확인해 주어야 한다. ⑥ (생략)	제149조(보수교육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 ⑤ ----- <u>면허증</u> ----- ----- -----. ⑥ (현행과 같음)
별표7 8. (생략) 가. 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면허증 신청의 접수·심사 및 면허증 <u>교부</u>	별표7 8. (현행과 같음) 가. ----- ----- <u>교부</u> (재교부 포함)